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5월 4일(금) 09: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 김성용 사무관여영섭 사무관(2110-4893)		

가짜석유 팔다 걸리면 2년간 영업 못한다

- 이달 15일부터 석대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특별단속 실시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및 과징금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시행
-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전담점검반 설치·운영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5.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대법) 시행(5.15)에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2011.10.14)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1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음

○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 (사업정지) 2개월→3개월, (과징금) 4천만원→1억원

2 한편,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수 있게 되었음

○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3 또한 지난 4. 19일에 발표한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4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등 활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 POS(Point Of Sales) : 석유제품의 입하출하재고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 아울러 금번 석대법 개정내용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 또한,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하여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6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5.15~6.30)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붙임> 1. 가짜석유 근절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 가짜석유 취급 처벌강화 등 석대법령 주요개정내용

<붙임 1>

국가정책조정회의 | 공 개

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2. 5.

지 식 경 제 부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가짜석유 근절 추진실적 ····· 2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 2

2. 처벌의 실효성 강화 ····· 3

3. 홍보 등 기타 대책 ····· 3

III. 향후 추진계획 ····· 4

1. 기존 대책의 지속 추진 ····· 4

2. 유통개선대책에 따른 가짜석유 우려 불식 ····· 5

3.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및 공감대 확산 ····· 7

Ⅰ 추진배경

□ '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사건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사망 4명) 발생

* 수원·화성 소재 주유소폭발('11.9.24, 9.28), 안산 가짜석유 주입차량 폭발('11.10.5)

○ 가짜석유 문제가 탈세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범부처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11.10.14)

□ 작년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 현황을 평가하고,

○ 5.15일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가짜석유 근절대책을 강화

○ 또한, 알뜰주유소, 혼합판매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주유소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도 촉진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요약)>

주요 내용	추진현황
대책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완료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완료(5.15 시행)
·단속효율화를 위한 제도 강화	완료(5.15 시행)
대책 2. 처벌의 실효성 강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완료(5.15 시행)
·과징금 상향 조정	완료(5.15 시행)
·용도외 판매 벌칙 강화	완료(5.15 시행)
·가짜석유 판매시 처분내용 공표	완료(5.15 시행)
대책 3. 홍보 등 기타 대책	
·가짜석유 폐해 등 대국민 홍보	완료
·'유사석유' ⇒ '가짜석유' 용어 변경	완료(5.15 시행)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중

Ⅱ 가짜석유 근절 추진실적

◈ 특별단속, 장비도입 등 법령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대책은 대부분 추진 완료, 석대법 개정사항은 개정을 완료하고 5.15.부터 시행 예정

대책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①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소 및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72업소를 특별단속하여, 33개 업소, 30만L 가짜석유 압수('11.10.4~10.31)

* 총 170건, 225명 검거(구속 11명, 불구속 214명)

-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등 설치 65개 업소 적발('11.9.27~10.31)

* 최근 5년간 불법시설물 적발 주유소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강제철거 조치

○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공급에서 소비단계까지 강력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수사기관, 국세청에 제공

②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이 명백한 경우 제조·판매 중지명령 권한 신설(5.15 시행)

○ 석유관리원 단속인력 충원,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지능적인 가짜석유 판매사범 적발을 위한 첨단장비 보강

* 석유관리원 단속인원 91명 증원, 이중탱크 확인을 위한 산업용내시경(10대) 등 보강

③ 단속효율화를 위한 제도 강화

○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소비자 수급보고를 의무화하고, 용제생산자·판매자의 수급상황보고 주기를 단축(월간→주간, 5.15 시행)

* 허위보고 및 미보고 시 과태료 상향 : (종전) 30~200만원 → (개정) 50~600만원

○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향(20→50만원) 조정을 통해 단속 효율성 제고

대책 2 처벌의 실효성 강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인 가짜석유 판매 적발시 1회 적발로 등록 취소,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금지토록 개정(5.15시행)

*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가짜석유 취급을 위한 시설물

□ (과징금) 가짜석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너무 낮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5.15시행)

* 대리점(7천만원→1억5천만원), 주유소(5천만원→1억원)

□ (용도외 판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용도외 판매 벌칙강화(5.15시행)

* 행정처분(1회위반, 사업정지 2개월→3개월) 및 과징금 상향(주유소, 4천만원→1억원)

□ (위반 게시)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의 사업장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게시* 규정 신설(5.15시행)

* "가짜석유 판매로 영업정지중" 현수막 게시(500cm×90cm)

대책 3 홍보 등 기타 대책

□ (홍보)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1]와 석유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2] 등 가짜석유의 해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추진중

1) 네이버 및 서울시내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여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11.11.~12.)
2) 지경부, 석유관리원 주관 전국 석유담당공무원교육 실시(4.25~4.27)

□ (용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5.15시행)

Ⅲ 향후 추진계획

◈ 5.15일 단속체계 강화조치가 담긴 석대법(시행령) 본격 시행으로 가짜석유 유통방지에 상당한 효과 예상

*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보고('11.10월)후, 용제의 유통단계별(생산→대리점→실소비자) 현지 실사를 지속 추진함에 따라 '12.1/4분기 용제 유통량 감소

⇨ 주로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1·4·7·10호가 전년동기비 40% 감소(102→60천kl)

◈ 향후 개정 석대법(시행령) 시행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가짜석유 근절 대책도 마련·추진

- 이를 통해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등 정부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짜석유 우려도 불식

1 기존 대책의 지속 추진

□ (특별 단속) 경찰청과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개정 법률 시행(5.15)에 맞춰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의 적용 사례 제시로 가짜석유 처벌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참고: 특별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2. 5. 15~6. 30
- 참여기관 : 지경부, 경찰청, 소방청, 석유관리원
- 중점단속 대상
 ·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행위
 · 주유소에서 시설 조작 등을 통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업장 등

* 이중탱크, 리모컨 등 지능적인 가짜석유 취급업소 단속을 위해 비노출검사시험차량 및 GPR 장비 등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
* 경찰청에서는 단속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독려를 위해 표창 및 수사비 등 인센티브 지원

2 유통개선대책에 따른 가짜석유 우려 근절

① 석유관리원에 알뜰주유소 전담점검반 운영

○ 가짜석유 유통사례*는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순천소재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최초 적발('12.4월)

○ 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 추진

⇨ 전담인력이 알뜰주유소 판매 석유제품의 정량, 정품여부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 알뜰주유소 간판제거, 시설개선 지원금 전액 환수 등

②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용제를 사용해 만든 가짜휘발유는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추적 단속으로 상당부분 차단이 가능하나,

- 등유를 혼합해 만드는 가짜경유는 전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차단 가능

* 주유소 단계에서 비밀리에 혼합하여 유통되므로, 일시적 단속으로는 적발에 한계

○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수급거래 상황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

* 정유사 ERP, 석유판매업자 POS 등을 통합관리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11.10월, 검토대상 과제로 제시)

⇨ '13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타당성 검토[1],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행령 개정[2], 시스템구축 지원방안 등 검토

1) 현재 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컨설팅 진행중('12.3~6월)
2) (시행령) 석유사업자 등록요건에 POS추가, (시행규칙)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 변경

<참고: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 (개념)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ERP, POS[1] 등 전산시스템을 통합 서버와 연계하여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2]를 수집·분석

1)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시스템) : 주유기와 PC를 연결하여 주유와 동시에 판매, 재고물량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2) 영업비밀의 성격이 강한 가격정보는 제외

○ (활용)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등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포착·분석

- 이상징후 업소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

< 참고 :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



○ (기대효과)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등유, 용제 등의 가짜석유 원료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세수 증가 효과

*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국세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국토부), 면세유(농식품부) 등의 불법유통 단속에 활용 가능

3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및 공감대 확산

□ (소비자단체 연계) '석유시장감시단'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석유시장감시단, 소비자연맹, YMCA 등 소비자단체 참여 검토

○ 관리원의 가짜석유 점검시 소비자단체 점검 체험, 가짜석유 근절 안내자료 배포, 소비자단체 합동 워크샵 등 추진

□ (주유소협회 자정노력) 주유소협회의 석유제품 취급현황에 대한 자체정보를 활용하여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제보

○ 협회와 관리원이 협력하여 취약시간대(주중 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추진
* 주유소협회의 신빙성 있는 정보제공시 관리원에서 현장점검 실시

○ 주유소 협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추진

□ (홍보) 가짜석유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공익광고, 자동차용품 등 홍보물, 현수막 등 활용
*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내용 및 가짜석유 근절 안내문 제작·배포 추진

□ (교육) 가짜석유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교육

○ 석유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5.2~5.11)과 용제사업자에 대한 석대법 개정 내용 순회교육 실시(5.7~5.10)

□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가짜석유근절대책협의회[1]'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석유유통관리협의회[2]'를 통해 유통시장 정보교류 및 단속 효율성 제고

1) 지식경제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환경공단으로 구성
2) 석유관리원, SK, S-Oil, GS, 현대오일뱅크로 구성

<붙임 2>

가짜석유 취급 처벌강화 등 석대법령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정 법령('12.5.15 시행)
명칭 변경	◦ **유사석유제품** - '유사'라는 명칭에서 일반소비자의 오해 소지	◦ **가짜석유제품** - '가짜'라는 명확한 표현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인식전환 기대
가짜석유 원료물질 관리강화	◦ 용제생산자 및 판매자 수급상황 보고 주기 : **월단위** ◦ 용제소비자 보고의무 : **없음** ◦ 수급상황보고 허위보고·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1회위반 기준) 주유소 등 100만원 용제소비자 없음	◦ 용제생산자 및 판매자 수급상황 보고 주기 : **주단위** ◦ 용제소비자 보고의무 : 일정 구매 실적 소비자 **보고의무 부여** ◦ 수급상황보고 허위보고·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1회위반 기준) 주유소 등 200만원 용제소비자 200만원
등록취소 후 동일장소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	◦ 가짜석유 취급으로 주유소 등록 취소시 동일장소 신규등록 제한기간 **6개월**	◦ 가짜석유 취급으로 주유소 등록 취소시 동일장소 신규등록 제한기간 **2년으로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3진 아웃제 - 시설개조 등 취급 수법의 악의성과 상관없이 3진아웃제 적용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비밀탱크 설치 등 시설개조 수법으로 가짜석유 취급시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가짜석유 적발시 과징금부과기준 일반대리점 등 7천만원 주유소 등 5천만원	◦ 가짜석유 적발시 과징금부과기준 일반대리점 등 1억5천만원 주유소 등 1억원
가짜석유 취급 목적 시설개조 등 처벌 신설	◦ 가짜석유 취급 목적으로 비밀탱크, 이중밸브설치 등 영업시설 개조시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만 적용 예) 비밀탱크 설치 행위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짜석유 취급 목적으로 비밀탱크, 이중밸브설치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설치·개조한 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행위 **석대법으로 별도 처벌 신설** 예) 비밀탱크 설치 행위 : 석대법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공표제도 실효성 제고	◦ 일반소비자의 가짜석유로 처벌받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접근성 미흡 - 석유공사 오피넷 등 인터넷 위주로만 공표제도 시행	◦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사업장에 **현수막 형태의 게시문을 부착** -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실효성 제고 기대
한국석유관리원 단속권한 강화	◦ 가짜석유 판매 현장 적발시에도 즉시 제재 곤란 - 단속권한 보유 지자체의 기술, 인력부족 등	◦ 한국석유관리원에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중지명령 권한 부여(위탁) - 실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관리원 적발즉시 중지토록 실효성 있는 제재 가능